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안 번호	1411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7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목적

- 지난 5월 28일(토)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이미 지난 2013년 1월 19일(토) 성수역과 2015년 8월 28일(토)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이어 발생한 동일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이번 사고 이후 밝혀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행 불가능한 업무 매뉴얼’, ‘조건부 민간위탁 용역업체의 서울메트로 전적자 특혜와 신규 직원의 열악한 처우’,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부실’, ‘사고 책임 전가 및 공사 면피용 협약서’, ‘서울시·공사의 관리 감독 미흡’, ‘공사 사장에 대한 고질적 낙하산 인사’ 등은 동 사고가 개인의 불찰이 아닌 서울지하철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서울메트로가 지난 2004년과 2006년 민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계약업체인 (주)유진메트로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구조 등 다양한 특혜 의혹이 확인되었는 바, 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등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3. 조사 범위

- 가.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한 서울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나.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의 직영·자회사·외주(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서울지하철 운영기관 퇴직자(전직자)의 자회사 및 외주(용역)업체 고용에 관한 사항
- 라. 서울지하철 안전 분야·시설물 및 업무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마. 서울지하철 사고 및 후속처리,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지하철 운영기관 사장 및 임원의 인사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사. 서울메트로와 (주)유진메트로컴의 계약 당시 특혜 및 외압 의혹에 관한 사항
- 아. (주)유진메트로컴의 실제 수익률 및 후순위 채권 등의 차입금 조성 경위에 관한 사항
- 자. (주)유진메트로컴 채용 근로자의 근로 및 처우여건에 관한 사항 등

4. 조사 방법

-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 나.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현장 방문조사
- 라. 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 중 진실규명을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함
- 마.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조사대상 기관 등

- 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나.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은성PSD, (주)유진메트로컴
- 다.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및 외부기관

6. 조사기간

- 가. 조사활동기간 및 조사일정
 - 2016. 9월 ~ 10월 : 조사일정 붙임 1) 참조
- 나. 조사장소 및 조사활동시간
 - 장소 : 교통위원회 회의실 및 피조사기관
 - 시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 또는 의장이 허가한 범위내의 시간

7. 조사위원회 구성(교통위원회)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서 영 진	○ 수석전문위원 김 동 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 상 훈	○ 사무요원(14명)
부위원장	새누리당	성 중 기	의사지원팀장 남 기 덕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인 호	전문위원 장 훈
"	"	김 제 리	입법조사관 조성준
"	"	김 태 수	입법조사관 조도형
"	"	박 진 형	입법조사관 박준영
"	"	신 원 철	행정주무관 김재민
"	"	우 형 찬	행정주무관 조재영
"	"	장 우 윤	행정주무관 유은아
"	새누리당	박 중 화	행정주무관 박은영
"	"	황 준 환	행정주무관 신정재
"	국민의당	최 판 술	입법분석요원 이시우
"			입법분석요원 김영재
"			입법분석요원 박유라
"			입법분석요원 윤영도
"			○ 속기 및 녹취요원(2명)
"			

8.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전문인력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9. 조사의 보고 및 처리

- 가. 본 조사 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의결로 조사 결과를 처리함.
- 나.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기관으로 이송함.

10. 기타 행정사항

- 가. 시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부서에 사전 통보함.
- 나. 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며, 본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 다. 법률 및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조사인력 활용에 따른 소요 경비는 추가로 지원함.

조 사 일 정(안)

일 정	대상기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2016.9.10 ~ 2016.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은성PSD - (주)유진메트로컴 -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및 외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위원회 회의실 - 피감기관 및 구의역 사고현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확인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 현장검증, 전문가 검증 - 증인·참고인 등 출석·신문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 현장검증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